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1드단○○○○○ 이혼등
원 고 ○○○ (69년생, 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윤봉근
피 고 ○○○ (65년생, 남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
사 건 본 인 1. ○○○ (97년생, 남자)
2. ○○○ (2001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8.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가.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의 주거지, 또는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1)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9:00까지
 - 2)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 중 각 6박7일간
- 나. 피고는 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5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9:00까지 및 매년 1월과 8월 중 원고가 희망하는 각 1주일간 원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6. 4. 3.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피고는 평소 원고와 상의 없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를 관리했는데, 원고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는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하고 잔소리를 하는 등 매우 인색하게 굴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주말이나 방학이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라고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폭언을 하거나 심할 경우 폭행까지 가했으므로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주말이나 방학기간에는 하루종일 도서관에 가 있어야 했다.

4) 피고는 혼인생활 중 종종 원고를 폭행하였는데, 그 중 주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05. 4.경 원고의 여동생집에 놀러갔다가 함께 외식을 했는데, 당시 그 식사비를 원고가 지불한 사실에 화가 나 원고의 여동생 가족이 근처 마트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원고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을 했다.

나) 원고는 2009년 가을경 집에서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여 머리에 피가 난 적도 있다.

다) 피고는 2010. 12. 15.경 부산 ○○구 ○○동 ○○○○-○ ○○○○동○○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했고, 이사를 가기 전 내부수리를 했는데, 내부수리 기간 중 원고 가족은 원고의 언니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원고는 언니 집에 열흘 이상 머물게 되자 피고에게 수리기간이 차일피일 지연되는 문제

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는 화를 내며 원고의 언니와 형부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라) 원고는 집을 나온 이후인 2011. 2. 27.경 친구들과 함께 ○○동 ○마트 후문 입구에서 우연히 피고를 마주쳤는데, 피고는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를 때렸고 발로 배를 차 쓰러지게 했으며, 그로 인해 원고는 코피를 흘리기도 했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온 후에도 피고의 폭언과 폭행이 나아지지 않자 2011. 1. 15.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당시 피고는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다 고칠게. 이혼만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돌변한 피고의 태도에 더욱 불안감을 느껴 2011. 1. 16. 집을 나왔다.

6)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후인 2011. 1.말경부터 원고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앞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7) 원고는 집을 나온 후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며, 사건본인들은 기존의 거주지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2)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2011. 1.경 이후 현재까지 1년 9개월

여를 별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부부상담 등을 통해 화해를 모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피고는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혼인생활 중 원고에 대해 독단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데, 원고가 이에 반발할 경우 심한 폭력까지 행사하곤 했으며, 그로인해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가출 초기에 가족들에게 원고가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의 이혼 요구가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원고의 태도를 비난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③ 위자료 액수: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참작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1. 6.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10,000,000원에 피고의 자금을 합쳐 신혼집을 구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2) 피고는 혼인 이후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했고, 현재는 ○&○ ○○(구 ○○○○)에 기술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는 혼인 당시 사기업의 사무직 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결혼을 위해 퇴직하여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다.

4) 혼인 이후 피고가 자신의 급여와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관리했다.

5)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0. 12. 15. 금 163,000,000원에 매수했는데 당시 매수대금 중 80,000,000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했으며, 변론종결일 무렵 위 아파트의 시가는 217,500,000원이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인데, 피고의 재산내역 및 가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인정 근거
적극 재산	1	○○○○아파트 ○○○동 ○○○호	217,500,000	갑 6, 8호증
	2	○○증권 출금액	30,830,222	○○증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3	○○○○신탁주식 8000주	9,200,000	○○증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4	주식통장 잔액	672,735	
	소 계		258,202,957	

소극 재산	○○○○아파트 담보대출금	80,000,000	갑 6, 8호증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178,202,957	

[위 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 35%, 피고 65%

[판단근거: 2의 가.항 인정사실, 원고가 혼인 이후 경제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가사노동을 하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내조한 공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기타 제반사정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피고 명의의 적극 및 소극 재산은 피고 소유로 확정하되,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

[판단근거: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60,000,000원

[계산식]

①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피고의 순재산 합계 178,202,957원 $\times$ 35% = 62,371,034원(원 미만 버림)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①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0,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는 혼인 중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사건본인들 역시 원고를 무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있으며, 만일 이혼이 된다면 자신은 더 이상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다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고가 혼자 집을 나온 2011. 1. 16. 이후 약 1년 9개월간 피고가 기존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왔으며,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기존의 양육환경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양육자로서의 결격사유는 없다고 보인다. 그 외에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기로 한다.

나. 면접교섭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주연 _____